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체 채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1(금))

- 의료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부가적인 실무지침임

□ 검체 채취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분리된 검체 채취 공간
- (검체 종류)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 번호 | 검체 종류 | | 비고 |
|----|-------|----------------------|--|
| 1 | 상기도 | · 구인두도말물 · 비인두도말물 |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실시 |
| 2 | 하기도 | · 가래 | ·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객담 유도 금지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검사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 또는 음압 채취실에서 가능 |

□ 개인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 (사용 원칙)

- 개인보호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표준주의와 더불어 비말주의(노출 상황에 따라 공기매개주의)
 - 상황, 행위, 용도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更衣실 등)
- 검체 채취 장소는 관련 지침¹⁾에 따라 적절히 소독

참고) US CDC. Interim Guidelines for Collection, Handling, and Testing Clinical Specimens from Persons Under Investigation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2020.2.14.)

WHO. Clinical managemen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when novel coronavirus(2019-nCoV) infection is suspected (2020.1.28.)

1)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 참조

Q 1.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는게 맞나요?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검체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객담 유도는 절대 금지하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Q 2. 본인이 자가 객담을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순환은 안되나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 3. 표준주의란?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임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음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http://www.cdc.go.kr> 알림·자료 - 지침